

## **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**

① 정책사업명	디지털성범죄를 유통방지		
② 추진배경	n번방 사건 이후 플랫폼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관계법(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법)이 개정·시행되고,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‘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’이 선정·추진됨		
③ 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목적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디지털성범죄물의 재유통방지를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 강화,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</li></ul>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근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)</li><li>○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(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), 제64조의5(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)</li><li>○ 성폭력방지법 제3조(국가등의 책무)</li><li>○ 국정과제 64-3(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)</li></ul>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잊혀질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및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</li><li>○ 24시간내 신속심의 및 삭제차단 실시</li><li>○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</li><li>○ 신고삭제 요청기관 지정 및 투명성보고서 공개</li><li>○ 성착취 영상물 삭제지원</li></ul></li></ul>		
④ 사업부서	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⑤ 담당자	김미정 과장 허성회 사무관 김기호 사무관
⑥ 선정기준	국정과제(실천과제)	⑦ 사업기간	'21년~현재
<b>&lt;그간 주요 추진내용&gt;</b>			
○ 기술적관리적조치 의무 시행	'21.12.10.	김미정 과장 허성회 사무관 김기호 사무관	

○ 사전조치의무사업자 투명성 보고서 공개	'22.6.30.	김미정 과장 허성희 사무관 박정희 주무관
○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회 개최	'22.9.1.	김미정 과장 허성희 사무관 박정희 주무관